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5. 10 선고 2021가단70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박기혁, 김남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승

변 론 종 결 2022. 4. 5.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경북 예천군 D 답 1,971.8㎡에 관하여 2020.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3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3. 26. 주식회사 E와 피보험자를 F 주식회사, 보험금액을 1억 2,800만 원(보험금액은 1억 4,08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보험기간을 2020. 3. 26.부터 2020. 11. 30.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2020. 8. 21.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9. 24. 원고로부터 1억 4,0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C은 2020. 7. 14.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경북 예천군 D 답 1,97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5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20. 8. 20.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950만 원에 매도하고, 2020. 8. 26. 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별지 1. 적극재산 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 있는데,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내지 시가 합계액은 166,545,660원이다. 반면 당시 C의 소극재산은 별지 2. 소극재산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752,687,000원에 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I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행보증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C의 적극재산의 시가 합계액은 공시지가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적극재산의 시가 합계액보다 클 것이 명백하므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다.

① 을가 제1호증(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이 2020. 5. 1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무와 상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② 피고는 2020. 7. 14. 이 사건 부동산을 3,500만 원에 매수한 후 불과 약 1개월 후인 2020. 8. 20.

이를 다시 4,950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정한 가격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0. 8. 26. 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는

3,5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중 원고가 구하는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조인

별지